

몰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5월 17일

강릉시장

1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의견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2. 공고방법 : 강릉시청 홈페이지(www.gn.go.kr)

3. 공고기간: 2024년 5월 17일~6월 5일(20일간)

4. 행정예고 내용

- 가. 내 용: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CCTV 설치
- 나. 운영목적: 몰수마약류 보관창고에 CCTV 설치로 보관물품 안전 유지 및 범죄 예방
- 다. 설치장소: 1개소/ 1대

연 번	설치 예정 장소	설치대수	촬영시간	비 고
합계	1개소	1		
1	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	1	24시간	신규

라. 문 의 처: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(☎033-660-3102)

5. 의견제출(별표 서식)

가. 제출기한: 2024. 6. 5.(수)

나. 제출내용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기관: 강릉시보건소 질병예방과(강릉시 남부로 17번길 38), 팩스: 033-660-3037

라. 제출방법: 방문 또는 우편, 팩스

※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별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(서식) 1부. 끝.

